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105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 9. 16. 접수 제23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표1. 보증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D	28,800,000	2012. 7. 10.	2021. 7. 2.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F은행 영도지점
2	E	63,000,000	2016. 7. 8.	2021. 7. 2.	기업종합 통장대출	F은행 영도지점

〈표2.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D	28,800,000	F은행 영도지점	2012. 7. 11.	32,000,000
2	E	63,000,000	F은행 영도지점	2016. 7. 8.	70,000,000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을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20. 11. 23.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F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원)	이자(원)	구상합계액(원)
1	D	2021. 3. 30.	23,400,000	449,305	23,849,305
2	E	2021. 3. 30.	54,000,000	986,341	54,986,341
합계			77,400,000	1,435,646	78,835,646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21. 3. 30.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55,38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78,780,259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2원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32,746원이다.

(4)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111446호로 지급명령신청(청구금액 78,780,271원)을 하여 2021. 4. 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는 2020. 8.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361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4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160,000,000원 상당의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극재산으로는 장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I에 대한 대출금채무 13,526,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164,000,000원, J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772,388,000원, F은행에 대한 29,102,942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 갑 8호증 내지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남짓한 2020. 11. 23.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20. 11. 30.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경 제3자를 통해 B를 소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20. 4. 13.경부터 2021. 9. 10.경까지 B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 명의로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는 2020. 9. 8. 주식회사 L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B는 2020. 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6,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20,000,000원, 다음날인 2020. 9. 9. 25,000,000원을 M에게 각 송금한 사실, M는 주식회사 L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토지의 표시

사천시 N 전 893㎡, 끝.

